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29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청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62,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6,2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4. 1. 14. 설립되어 광산업, 임업 및 축산업, 목재 및 목재가공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 및 C이고, 사내이사는 원고, C, D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22호증)에는 당기 초 주주가 E(지분율 25%, 주식수 7,500주), 원고(지분율 50%, 주식수 15,000주), D(지분율 25%, 주식수 7,500주) 3명이었는데, 원고가 E, D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당기 말 주주는 원고(지분율 100%, 주식수 30,000주) 1명으로 되어 있고, 2011. 9. 30. 기준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도 원고가 주식 3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도 ○○시장은 원고가 E, D의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구 F아파트 ○○동 1508호의 2011. 12. 말 기준 장부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1,362,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이의 신청을 거쳐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2. 3.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취득하였고, 그 후 1992.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28. G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1993. 3. 5. H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각 취득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을 E,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 9. 30.경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D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H, G은 1992. 3. 30. I, J, K,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인수대금 11억 7,000만 원에 인수받았다. 다만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M, K, N, J, L, O, P, I으로 되어 있었고, 법인매매계약서 상 양수인 대표로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변동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주주	주식수(지분)
1991. 9. 30. (액면가 1,000원)	M	5,640주
	K	26,610주
	N	12,750주
	J	30,000주
	L	22,500주
	O	12,000주
	P	18,000주
	I	22,500주
1992. 9. 30. (액면가 5,000원)	H	7,500주(25%)
	G	7,500주(25%)
	L	7,500주(25%)
	E	7,500주(25%)
1993. 9. 30.	L	15,000주[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E	7,500주(25%)
	D	7,500주(25%)
2000. 9. 30.	E	7,500주(25%)
	D	7,500주(25%)
	A(원고)	15,000주(50%)
2011. 9. 30.	A(원고)	30,000주(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1. 9. 30.경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인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통하여 2011. 9. 30. 이전 원고가 E, D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응 적법하고, E, D 명의의 주식이 위 두사람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 원래 원고 소유의 주식이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1) 1993. 9. 30.자 주주명부(갑 제17호증)에는 L의 소유주식수가 15,5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000주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2. 11. 28. G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1993. 3. 5. H 소유의 주식(25%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당시 위 주식 취득대금을 G, H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② 원고는 1992. 3. 30.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원고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원고가 1992. 말 및 1993. 초경 G, H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신용보증기금 작성의 회신문(갑 제25호증)에 의할 때에도 원고는 1997. 10.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불량규제가 해제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가 제출한 1992. 3. 30.자 법인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대표양수인으로 원고 이름만 있고, 양수인별 취득 주식수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무렵의 영수증과 약정서(갑 제2 내지 11호증)에는 주식 양수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원고가 1992. 말 및 1993. 초경 G,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볼 수 없다.

④ 1992. 11. 19.자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갑 제12호증)에는 주식 7,500주(25%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 G, 양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날자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갑 제13호증)에는 주식 7,500주(25%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 E, 양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2. 11. 19.경 원고는 G으로부터 주식 7,500주(25% 지분)를 취득하였을 뿐 E으로부터 주식 7,500주(25% 지분)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같은 양식의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가 같은 날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양식의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G과 원고 사이에 주식 7,500주에 대한 양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인증서(갑 제23호증), 확인서(갑 제24호증)는 원고의 처남인 L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0주(50% 지분)를 원고(또는 원고 및 Q)로부터 명의수탁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E, D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다.

⑥ 증인 D의 증언 및 D의 인증서(갑 제26호증)에 따르면 D는 이 사건 회사 주식 7,500주(25% 지분)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1. 9. 30. 명의신탁해지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사후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2014. 7. 23.자 금융거래정보회신(○○은행) 67쪽에는 D 명의 계좌로 1992. 3. 28. 264,000,000원, 1992. 3. 30. 36,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2. 3. 30. 300,000,00 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오나, 위 돈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어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위 자료는 D가 주식의 취득자임을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⑧ R, S, T의 각 확인서(갑 제27 내지 29호증)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사후 진술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취지일 뿐 원고가 1992.말경 및 1993.초경 G,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아니다.

⑨ 이 사건 회사 주권 뒷면에 양수인을 원고로 한 기재가 있으나, 그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 주권 실물 전부를 원고가 계속 보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금고 사진(갑 제3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주권 실물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원고가 주권 실물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의 양해 아래 주권 실물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 원고와 다른 주주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른 담보 목적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임영철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끝.